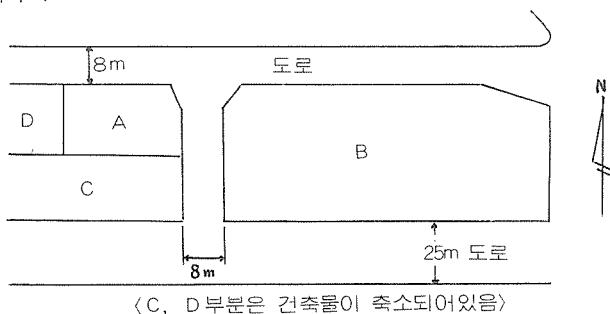


건축행정 / 질의응답

문 도로 및 대지의 형상이 그림과 같이 분할되어 상업지역 정류장지구로 고시가 된 지역으로 도면의 B, C, D, 부분은 고속버스 터미널로 사용되고 있고 A대지($151.8m^2$)에 건축코자 하는 바 시 당국에서는 동정류장 지구에 대한 조례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위 A대지에 상업지역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여부?



〈C, D 부분은 건축물이 축소되어있음〉

답 A대지가 이미 도시계획상 정류장 시설로 결정된 구역에 포함된다면 당해 정류장 시설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이용시설의 설치는 불가합니다. (건설부)
문 전축법 시행령 제 7조를 적용함에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$300m^2$ 미만이며 기존 건물과 합한 연면적은 $300m^2$ 이상으로 평면증축할 경우 공사감리자의 선정여부? (단 증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최고 높이는 13m이하, 체마높이 9m 이하임).

답 기존 건축물에 붙여 증축하는 부분의 면적이 공사감리 대상 면적 이하인 건축물은 전축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 대상 건축물이 아닙니다. (건설부)

문 전축법 시행령 제 140조의 2의 적용에 관하여 경사도 12° 정도의 구릉지를 개발한 대지로서 23m 미만의 막다른 도로의 지점에 계단이 설치되고 사실상 차량통행이 불가한 경우에도 각각전제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?

답 전축법 시행령 제 14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도로 모퉁이 부분에 건축선을 정하여 각각 전제를 하여야 하는 대지라 하더라도 도로모퉁이 부분에 차량통행이 불가능한

경우 단독의 시설이 있을 때에는 동 제 1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에 관계없이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.

(건설부)

□ 건축법

문 주택 2층건물로 2층부분에 5평정도 증축하고자 하는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? (시민전화)

답 전축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신고로 가능합니다. (구청 건축과에서 처리중임)

문 6m 및 8m 도로변에 있는 대지로 8m 도로변에 타인대지가 11평 있는데 구입해야만 건축이 가능한가?

(시민방문)

답 귀하의 대지가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 구입하지 않아도 전입할 수 있도록 도로에 접한 경우는 구입하지 아니하여도 건축허가 가능함.

문 4m 도로가 있을 때 도로의 사선제한은 받지 않는지요? (회원전화)

답 4m 도로의 반대편 경계선에서 건축물 외곽선까지의 거리의 1.5배까지 제한을 받습니다.

문 구획정리를 한 상업지역의 대지 면적이 $150m^2$ 인데 건축이 가능합니까? (시민방문)

답 현재로서는 구획정리를 도시계획사업의 실시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건축이 불가함. (전축법이 개정되어 1982. 7. 1 이후 가능함)

문 미관지구와 아닌 지역에 걸쳐 있을 때 지역지구는 어디에 적용되는지요? (시민방문)

답 원칙적으로 동 대지의 과반이 상이 해당되는 지역지구의 적용을 받지만 떠모양으로 설치된 미관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관지구에 건축할 때는 당해 미관지구의 적용을 받습니다.

문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허가시 정화조 설치신고를 포함하는데 언제부터 시행하는지요? (시민전화)

답 건축허가 및 준공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의 신고나 검사를 동시에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1982. 7. 1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.

문 전축법 제52조가 개정됨에 따라 노선 상업지역의 명칭이 빠졌는데 노선 상업지역에 걸칠 경우 과반수 이상 걸치는 지역은 적용을 받습니까? (시민전화)

답 개정 전축법에 의하면 노선 상업지역에 걸칠 경우 과반수 이상 걸치는 지역의 건축제한을 받습니다.

문 축대 상단에서 뛰워야 할 거리는? (시민전화)

답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층수가 2층일 경우 $2m$, 3층일 경우 $3m$ 이상 뛰워야 합니다.

□ 시행령

문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50m인데 현재 도로는 3m입니다.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요? (시민전화)

답 제 138조에 의하면 막다른 도로가 35m 이상일 때 도로의 폭은 6m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귀하의 경우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1.5m이상을 후퇴하신 후면 건축이 가능합니다.

[문] 법에 의한 지하층을 파려면 기계실 등도 포함을 시키는지요?
(시민전화)

[답] 지하층 중 건축설비 및 운전에 전용되는 부분 등은 지하층 설치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.

[문] 풍치지구 및 주거지역 내 대지면적이 170㎡인데 건축률 30%를 지을 경우 건축면적이 51㎡로서 기준에 부적합한데 구제방법은?
(시민방문)

[답] 령제180조 제 4 항에 의한 경우 즉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부적합한 경우라면 건축면적이 51㎡ 라도 가능합니다.

[문] 조경면적 산정에 있어서 령제168조의3 제 2 항 제 2 호의 조경면적의 1/2이란 무슨 뜻입니까?
(회원전화)

[답] 령제168조의 3에 의한 조경기준의 50%만 계산한다는 내용입니다. 즉 육상의 경우(지표면으로 2m 이상) 기준 이상의 조경을 설치한다 해도 기준산정에 있어서의 50%만 인정을 해준다는 뜻입니다.

[문] 공해공장의 대지경계선과의 거리는?
(회원전화)

[답]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직각방향 수평거리 4m 이상, 처마끝으로부터 직각방향 수평거리 3m 이상입니다.

[문] 동일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동마다 지하층을 설치해야 합니까?
(회원전화)

[답] 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그연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의한 면적이상의 지하층을 어느 동에든 설치하면 됩니다.

[문] 공사감리를 할 때 꼭 상주를 하여야 되는지요?
(시민전화)

[답] 연면적이 3,000㎡ 이상이거나 5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상주공사감리를 하여야 합니다.

[문] 인접대지 경계가 축대로 되어 있는데 일조권을 적용하여 북측에 거리를 띄어야 되는지요?
(시민전화)

[답] 시행령 제167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.

[문] 동별대지내 수동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동별준공이 가능합니까?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는?
(시민전화)

[답] 동별 준공검사는 가능합니다. 법적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 8 조에 의거 행하고 있습니다.

[문] 준공업지역 내에서 공장증축이 가능한지요?
(시민전화)

[답] 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을 제외한 공장은 가능합니다.

[문] 아파트의 발코니는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요?
(시민전화)

[답] 난간벽의 면적이 바닥의 외곽선으로부터 지붕등에 이르는 수직면의 면적의 1/2미만에는 면적에서 제외됩니다.

[문] 아파트 건축시 2개 이상의 전면도로가 각각 20m일 경우 모든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합니까?
(회원전화)

[답] 각 도로경계선(건축선)으로부터 6m 이상 또는 건축물 높이의 1/2이상 띄어야 합니다.

[문] 상업지역내에서 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는 얼마입니까?
(시민전화)

[답] 높이의 12m를 감하여 그것을 40으로 나눈 값에 0.5m를 더하면 띄우는 거리가 나옵니다.

[문] 주택의 다락방은 면적에 포함되는지요?
(시민전화)

[답] 다락방의 반자높이가 1.8m 미만일때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됩니다.

[문] 피난거리 30m란 실의 구석으로부터 피난계단까지의 거리로 계산합니까?
(회원전화)

[답] 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각실의 문 등을 통한 보행거리 30m 이내에 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.

[문] 주거지역안의 대지 옆으로 2m 도로가 통하고 있는데 2층을 지을 경우 얼마나 후퇴해야 하나요?
(시민전화)

[답] 통과도로일 경우 건축선에서 1m를 띄우셔야 합니다.

[문] 기존건물을 목욕탕으로 용도변경 하려 합니다. (기존 건물은 6m 도로에 접한 점포 2층) 기존 목욕탕과의 거리제한과 용도변경 가능 여부?
(시민전화)

[답] 기존업소와의 거리제한은 없으며 기존건축물이 적법건축물인 경우 용도변경 가능함.

[문] 동측의 3층 건물 신축으로 일조권피해가 있을경우 이의 대책은?
(서대문구 창천동 시민방문)

[답] 주거지역 내 동서측은 일조권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.

[문] APT 설계시 단지내 고저차로 인한 일조권 계산은?
(회원전화)

[답] 고저차의 평균높이를 건물에 가산하여 건물높이의 1.25배를 이격하면 됩니다.

[문] 시행령 제167조 일조권 등의 제한에서 주거지역의 범위는?(주거전용, 주거, 준주거 등 3 지역이 포함되는지 여부)
(회원전화)

[답] 주거지역 만이 해당됩니다.

[문] 일단의 대지내에 단독주택 2개 동을 건축할 경우 2개 동의 인동거리는 얼마입니까?
(회원전화)

[답] 동일 대지안의 2개 이상의 건축물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3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.

[문] 지하층 규정적용에 있어 차고 등의 일면이 완전 노출되었을 경우 삼면이 모두 흙속에 묻혔다면 지하층이라고 해도 되는지요?
(회원전화)

[답] 삼면이 모두 흙속에 묻혔을 경우에도 1면이 완전 노출되었다면 지하층으로 볼 수 없습니다.

[문] 용도의 제한은 없이 모든 용도가 복합으로 설치될 수 있나요?
(시민전화)

[답] 용도지역에 따른 제한도 있으며 시행령 제9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방화상 유해한 복합용도의 제한도 있습니다.

[문] 직통계단구조가 동일평면 내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통계단으로 인정되는지요?
(시민방문)

[답] 직통계단은 오르내림이 동일 평면내에 있어서 수직되게 피난층까지 설치되어야 직통계단으로 인정됩니다. 즉 동일층에서 계단의 위치가 바뀌어지면 인정치 않습니다.

[문] 지하 옥내에서 주차면적이 400㎡를 초과합니다.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합니까?
(시민전화)

[답] 용도상 불가피한 경우는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.

문 지하실의 비상계단은 방화구획되는 부분마다 설치하여야 합니까? (시민전화)

답 방화구획이 설치되는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.

문 지하층 설치 규정에서 8층이면 바닥면적의 2배를 설치하여야 합니까? (시민방문)

답 16층 미만일 경우 지상층 면적의 1/10이상이면 가능합니다.

문 6층 280m² 건축물에 계단이 1개 있을경우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요? (대전지방)

답 6층인 건물에서는 거실의 합계가 300m² 이내에서 직통계단이 있으면 승강기 설치없이 가능합니다.

문 지하층 설치 없이 가능한 여유공지가 얼마입니까? (회원방문)

답 5층이하의 건축물로 건폐율에 의한 공지 이외 당해건물 면적의 1/8이상 공지가 있을 경우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문 연립주택의 공원과 경계에서 뛰워야 할 거리는 얼마입니까? (회원전화)

답 공동주택은 대지경계선에서 외벽지까지 3m, 처마 끝까지 2m 이상(2층 이하에서는 2m, 1.5m이상) 뛰어야 합니다.

문 주택(주거 지역) 건축시 정북방향에 뛰워야 할 거리는 ? (일반방문)

답 건물의 각 부분에서 1/2이상 뛰워야 하고 건물의 최고높이가 8m일 경우 1/4이상 뛰워야 합니다.

문 한증탕은 건축법용도 분류시 어디에 포함되나요? (시민전화)

답 공중이 사용도록 계획된 것이라면 근린생활시설에, 공동탕 이외의 것이라면 위락시설에 포함됩니다.

문 4층 건물 각층 바닥면적을 240m²로 건축하고자 하는데 2개 이상의 계단이 필요한지요? (사무실 용도임) (시민전화)

답 사무실 3층 이상의 총의 바닥면적 200m² 이상일 경우 2개 이상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합니다. (단, 주요 구조부를 내화고도로 할 경우는 400m² 이상이므로 필요 없습니다.)

문 K.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제품은 어떤것이 있습니까? (시민방문)

답 한국공업규격 표시품을 사용해야 하는 재료는 건축법 제25조에 의거 건축법시행령 제22조 별표 10에 규정된 톨랜드시멘트, 콘센트 및 플러그, 복층유리 등이 있습니다.

문 면적 1200m² 인 점포 음식점일 경우 건축선후퇴는 얼마를 하여야 하는지요? (시민전화)

답 바닥면적 1000m²를 넘는 판매시설일 경우에는 4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셔야 됩니다.

문 업무지구에서 종합병원을 신축하려 합니다. 저촉사항은? (시민전화)

답 종합병원의 성격이 격리 병원(전염병원, 정신병원 등)이 아니면 가능합니다.

문 12.0m 도로변 3층 건물을 신축시 북쪽에 일조권 저촉에 완화를 받는다는데 사실인지요? (시민전화)

답 시행령 제167조에 의거 폭 20m 도로변 이상이어야 합니다.

문 바닥면적 500m² 인 건물 4층에 총고 1.8m로 창고를 증축할 경우 면적에 산입됩니까? (시민방문)

답 거실용도가 아닌 경우라도 1.8m이면 층으로 간주되고 이 경우 바닥 면적에도 산입됩니다.

문 1층 바닥면적이 150m² 인 5층 건물의 방화구획은 어떻게 합니까? (시민전화)

답 면적 1000m² 이하이라도 3층 이상인 경우 3층이상 부분에 대하여는 층별 방화구획을 하여야 합니다.

문 학교에서 조경면적 산출은? (시민전화)

답 조경면적 산출은 용도에 따라 정해져 있지 않고 대지면적에 따라 다릅니다. 대개 학교대지가 2,000m² 이상이므로 대지 면적의 15%가 해당됩니다.

문 옥상의 승강기탑, 장식탑, 옥탑 등이 바닥면적의 1/8이상이 넘어 층수에는 산입이 되는데 바닥면적에는 산입이 안된다는게 사실인지요? (시민전화)

답 바닥면적의 1/8이상이 되어 층수에 산입되더라도 승강기탑, 장식탑, 옥탑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.

문 주택의 지하실의 높이가 1.5m입니다. 바닥면적에 산입합니까? (시민전화)

답 지하실을 창고의 용도에 사용될 경우 바닥면적에 사용하지 않습니다.

문 옥외 비상계단을 켄틸레버 구조로 설치코자 합니다. 이 경우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은? (시민전화)

답 바닥면적 산정시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명 면적으로 하며 건축면적은 전체 수평 투명 면적으로 합니다.

문 피난상 보행거리 30.0m로 되어 있으며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로 되어 있는데 거실 이외는 해당되지 않는지요? (회원전화)

답 거실 이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
□ 건축조례

문 숙박시설이 주거지역 안에서는 노폭에 따라 제한되나요? (시민방문)

답 주거지역 안에서 12m 미만 도로에서는 숙박시설이 설치될 수 없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.

문 서울시내에 공동주택(아파트) 건립시 용적율은 얼마이며 지하실 면적이 용적율에 산입되는지요? (시민전화)

답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(아파트) 건축시의 용적율은 180%이며 지하실의 면적은 면적에는 산입되나 용적율 산정시는 제외됩니다.

문 마포인데 종전 규정에는 15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고 있었는데 현재도 적용되는지요? (시민전화)

답 서울 도심(4대문) 고도기준 조정후 해당지역이 아니므로 건축법령에 적합하면 15층 이상도 가능합니다.

문 12m 도로에 접하는 대지인데 건축선으로부터 뛰우는

거리 (서울시조례)를 지킴에 있어 텁장도 해당되는지요?

(회원전화)

답 텁장도 건축선으로부터 1.5m 이상 후퇴하여야 합니다.

문 주거지역이고 제 4 종 미관지구로서 30m 도로확장으로 360m²의 땅이 148m²가 되었을 경우 건폐율, 용적율 및 도로에서 3m 후퇴여부?

(회원전화)

답 도시계획 시설 설치로 인한 자투리 땅에 대하여는 건폐율은 당해지역지구 전폐율 + 10%, 용적율은 당해 용적율의 2배 이하이며 전면도로에서 빼어야 할 거리는 인접건축물의 건축선으로부터 후퇴거리 이상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거리로 완화 적용되고 있습니다.

문 제 2 종 미관지구내 400m² 대지에 300m²의 건물을 있을 경우 별동으로 증축이 가능한지요?

(회원전화)

답 현행 건축법규에 맞추어 증축할 수 있으나 별동 건물을 전면에 증축할 경우 건축조례의 규정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지는 예의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.

문 대지내 조경에 있어 100m²에 교목 30본과 관목 50본을 동시에 식재하여야 하는지요?

(회원전화)

답 100m²를 조경할 경우 관목으로 50본 이상 또는 교목으로 30본 이상 심으면 되며 동시에 심는것은 아니며, 되도록이면 교목을 식재 면적의 50% 이상 심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.

문 제 2 종 미관지구내 도시계획으로 대지가 200m²로 되었을 경우 현 60m² 건물을 증축할 수 있는지요?

(시민전화)

답 증축 가능합니다.

문 자투리 땅으로 적용받는 대지인데 (제 2 종미관지구) 4층을 지을 수 있나요?

(시민전화)

답 3 층까지 지으셔야 합니다.

문 제 4 종미관지구로 주위에 기존건물이 있는 100m²도 신축 가능합니까?

(시민전화)

답 제 4 종 미관지구에는 인접주위에 기존 건물이 있어도 100m²에는 건축허가(신축)가 불가합니다.

문 미관지구내 건축할 경우 3m 이상 후퇴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주차가 가능합니까?

(시민전화)

답 원칙적으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차시설은 불가합니다.

문 2 종 미관지구내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대지입니다. 5층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?

(회원전화)

답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기준미달 대지가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3 층 건축이 가능합니다.

□ 주차장법

문 옥외 2 단주차가 가능한지요?

(회원전화)

답 옥외주차를 일정비율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옥외 공간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2 단주차장은 구조물이므로 옥외주차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.

문 지하실 165m², 지상층 330m²를 지을 때 주차대수는?

(회원전화)

답 4 대가 필요합니다.

문 연립주택을 4m 도로변에 지을 수 없다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?

(시민방문)

답 서울시내 일원에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 주차장을 연면적 200m²마다 1 대씩 설치하여야 하나 6m 미만 도로에는 주차장 입구를 설치 못하므로 건축이 불가능합니다.

문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어떤 내용으로 개정되었는지요?

(회원전화)

답 시행공포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. 주요 골자는 연면적 1,000m² 미만의 특정건축물일 경우 진입로가 6m 미만도 가능합니다.

문 주차장 램프의 폭은 얼마이어야 합니까?

(시민방문)

답 출입구가 1개일 경우 5.5m 이상이어야 합니다.

문 1,000m²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4m 도로에 주차장 입구를 설치 할 수 있습니까?

(시민전화)

답 1,000m² 이하의 건축물의 주차장 출입구는 4m 도로에 설치 가능합니다.

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 13조의 진입로의 1차선인 경우와 2차선인 경우는 각각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?

(시민전화)

답 주차장의 입구와 출구가 있어 일방통행 될 수 있는 경우로 3.5m이면 가능하며, 출입구가 1개소로 출입하는 경우 5.5m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.

문 대지 145m²에 66m²의 1층점포와 그 위 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요?

(시민전화)

답 필요 없읍니다. 주택과 점포는 별도로 주차면적을 산출하므로 해당 없읍니다.

문 주차장 면적이 좀 큰편인데 주차장 출입구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요?

(시민전화)

답 주차장 면적이 6000m² 이상일 경우는 주차장으로의 출

구 및 입구를 따로 설치하셔야 합니다.

□ 건축행정

문 시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은것에 대한 준공은 어디서 받나요?

(시민전화)

답 관할구청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문 제 2 종 미관지구내 건축물입니다. 현재 법령에는 저촉되나 과거에는 적법한 절차를 드하여 신축한 건물로 외장이 퇴색되어 외장변경을 하고자 합니다. 가능할까요?

(시민방문)

답 미관지구내 외장변경은 대수선 사항이므로 건축허가를 드하여야 하며 미관심의를 거쳐야 합니다.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필하면 외장변경이 가능합니다.

문 500평의 대지에 3인의 공동 소유자가 단독주택 3동을 지으려 하는데 가능여부?

(시민전화)

답 각 단독주택의 최소 대지면적 이상인 대지는 3동 건축이 가능합니다.

문 본인 대지는 10m², 타인 대지는 53m² 인데 집이 넓어서 고치려고 할 때 대지주인의 승낙없이 고칠 수 있나요?

(시민방문)

답 대지주의 사용승낙 등 필요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하셔

야 합니다.

[문] 목욕탕 건축시 거리제한이 별도로 시행되고 있나요?

(시민방문)

[답] 거리제한은 없으며 제반 법규정에 적합하면 됩니다.

[문] 인근의 건물에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의 시정요청은 어디에 합니까?

(시민전화)

[답] 관할구청 건축과에 시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
[문] 고층건물의 준공검사에 도면의 마이크로 필립화는 꼭 제출하여야 하는지요?

(회원전화)

[답] 법적으로 준공 검사시에 허가도면의 마이크로 필립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나 서울시에서는 비상시의 활용을 위하여 10층 이상의 건축물의 준공시에 허가도면의 마이크로 필립을 첨부하도록 행정 유도하고 있으니 협조 바랍니다.

[문] 전기안전진단 필증은 첨부를 해야 하나요?

(시민전화)

[답] 전기안전 진단필증은 준공검사 신청서에 첨부하지 않도록 개선되었습니다.

[문] 준공을 받지 못한 공사중인 건축물로 용도상 출입문 및 계단을 변경 설치하려는데 준공을 필한 후 시공해야 하는지요?

(시민방문)

[답] 경미한 변경사항(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변경)은 임의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으로 인하여 인접대지 피해, 구조적 불합리, 미관지구 등으로 외관변경 등이 되는 경우는 준공전 건축허가(설계변경) 후 시공가능함.

[문] 5년전 5층 건축설계와 허가를 득한 후 3층까지만 짓고 준공을 필하였음. 금년에 4,5층을 증축코자 할 때 구청에서 구조상 불안하다고 허가를 불가로 처리하였으므로 그 해결방안은?

(시민전화)

[답] 구청에서의 민원서류 보관년수는 3년이므로 옛서류가 없으므로 구조기술사의 기존건물 구조 검토 확인 및 안전진단 결과 후 가능하면 허가할 수 있음.

[문] 주거지역내 여관건축 허가시 거리제한은?

(시민전화)

[답] 여관 상호간의 거리제한은 없습니다.

[문] 미관지구인데 앞면을 보기 좋게 바꾸려고 합니다. 수속절차를 알려 주십시오.

(시민전화)

[답] 건축심의를 받으신 후 대수선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.

[문] 옥탑으로서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가옥 대장등에 등재하지요?

(시민전화)

[답] 건축법상 연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은 등재되지 않습니다.

[문] 지정 건폐율 이하로서 여유공지가 충분히 있을시 공동주택을 설계하려면 지하층 면세 규정의 혜택을 받는지요?

(시민전화)

[답] 공동주택은 여유공지가 충분히 있더라도 밀집 주거환경이므로 민방위법에서 제정한 1인당 대피 면적을 계산하여 최소치의 대피소는 있도록 행정 유도합니다.

[문] 입지심의와 계획 미관심의가 어떻게 다르며 어떤것을 먼저 합니까?

(시민전화)

[답] 입지심의는 신청건물로 인한 주위환경의 변화와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며, 계획(미관)심의는 신청건물의 기능 및 외관을 심의하고 공동주택은 입지심의 후 계획심의가

이루어지며, 일반건물은 계획심의 후 입지심의가 이루어집니다.

[문] 지역이나 직장 예비군관계 무기고를 지을 때 건축에 관한 세부사항이 있는지요?

(시민전화)

[답] 건축관계 법 규정에는 특별한 시설 제한이나 기준이 없습니다.

[문] 한대지에 3동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?

(시민전화)

[답] 한동을 지을 수 있는 대지면적 × 3이상의 대지인 경우 지을 수 있습니다.

[문] 연립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타인 대지를 사용 승낙 받아도 가능합니까?

(시민방문)

[답] 연립주택에 한하여 대지 사용승낙은 불가합니다. 그 이유는 연립주택 분양시 대지소유권 이전 분쟁이 자주 야기되어 취해진 조치입니다.

[문] 건물안전도를 검사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?

(시민방문)

[답] 인근건축사 설계 사무소나 대한건축사협회에 건물안전진단의뢰를 신청하면 됩니다.

[문] 주거지역내 주택의 조경면적은?

(시민전화)

[답] 법상 5% 이상이면 가능하나 10% 이상으로 행정 유도하고 있습니다.

[문] 서울시에서는 지하층 규정에서 여유공지를 인정합니까?

(시민방문)

[답] 인정합니다.

□ 기타규정

[문] 건축사법 시행령 제25조의 업무범위에서 연면적을 1동의 연면적으로 봅니까?

(회원전화)

[답] 연면적에 대한 정의는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법상 연면적이라고 함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이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동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합니다.

[문] 주거지역, 풍치지구내에서 지목이전일 경우, 형질변경없이 사업승인이 가능한 범위는?

(회원전화)

[답] 주택건설 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승인할 경우 토지의 3/10 범위내에서 도로, 주차장 등을 포함, 형질변경없이 가능합니다.

[문]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가 아닐 경우는 도로로 볼 수 없는지요?

(시민전화)

[답] 도시계획법뿐만 아니라 도로법, 사도법 등에 의하여 고시된 도로 또는 건축허가시 시장,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도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에 포함됩니다.

[문] 지하층은 대지 경계선에서 얼마나 띄워야 합니까?

(시민전화)

[답] 서울시 건축공사 안전규칙에 의하면 1m 이상 띄워야 합니다.

[문] 주택조합의 구성원의 자격에 있어서 일반 무주택자로서도 가능합니까?

(시민방문)

[답]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면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에 한해서 주택조합이 가능합니다.